

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안내

【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2021.1.5. 신설(2021.7.6. 시행) 】

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제14조의2(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)

-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,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**하여야 한다.
 1. 사람이 사망한 사고
 2.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
 3. 화재 또는 폭발 사고
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
-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(과태료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**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**한다.
 8.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

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제9조의6(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)

- 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**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”**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·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**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**를 말한다.
- ②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**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·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보고하는 방법**으로 한다.

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[별표6] (과태료의 부과기준)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거.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25조제1항 제8호	<u>200</u>		

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발생사항 보고서(팩스 및 정보통신망 사용시)

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발생사항 보고서

보고인 (영업주)	영업주명	생년월일	전화번호
영업장 현황	상호 (업종)		
	소재지		
사고개요 및 피해상황	일시		
	장소	영업장 층 내 [<input type="checkbox"/> 룸, <input type="checkbox"/> 내부통로, <input type="checkbox"/> 주방 <input type="checkbox"/> 화장실,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상구,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장소] ※ 기타장소 기재()	
	사고내용	[<input type="checkbox"/> 화재, <input type="checkbox"/> 폭발, <input type="checkbox"/> 중독,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상구 추락,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] ※ 기타사고 기재()	
	피해사항	사망 명, 부상 명	
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의2에 의거 위와 같이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발생사항을 보고합니다.

2022년 월 일

보고인(영업주)

(서명 또는 인)

인천계양소방서장 귀하

※ 연락(전송)처

○ 전화번호 : 주.(예방안전과) 032-650-5615, 야.(현장대응단) 032-650-5617

○ 팩스번호 : 주.(예방안전과) 032-555-5636, 야.(현장대응단) 032-555-8119

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발생사항 보고(문자발송시)

SKT 4:22 BAND TALK

100%

< 새 문자 메시지

받는사람 032-650-5615(예방안전과)



영 업 주 : 홍길동(생년월일 00.00.00.)

상 호 : 00노래방(계양구 00대로 00)

사고사항 : 2022.00.00. 00:00경 영업장 0층

이용객 00명 비상구 추락사고 발생

피해사항 : 00여명 부상



※ 위의 내용은 예시이므로, 사고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하여 주시고, 가능하면 사고사진 첨부 발송바랍니다.

다중이용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안내



- 소방안전교육(신규·수시[법령위반시]·보수[2년마다])을 받아야 함
-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·유지하여야 함
-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작성(분기 1회, 연 4회)하고 보관(1년간)하여야 함
- 안전시설등 설치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
- 비상구에 추락방지 장치(도어경보기, 추락방지표지 및 안전로프(2줄 이상))를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
-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·유지하여야 함
- 내부구획기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·유지하여야 함
-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·훼손·변경 등의 행위를 아니하여야 함
-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함
-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-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발생 시 영업주는 소방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

- 보고방법 : 전화(문자) 및 팩스 등

- 보고내용 : ① 영업주 및 상호
② 사고개요(육하원칙에 의거 작성)
③ 피해상황(0명 부상 혹은 사망)

<안전사고 문자 발송 예시문>
 영 업 주 : 홍길동(생년월일 00.00.00.)
 상 호 : 00노래방(계양구 00대로 00)
 사고개요 : 2022.00.00. 00:00경 영업장 0층
 이용객 00명 비상구 추락사고 발생
 피해사항 : 00여명 부상

※ 연락(보고)처

- 전화번호 : 주.(예방안전과) 032-650-5615, 야.(현장대응단) 032-650-5617
- 팩스번호 : 주.(예방안전과) 032-555-5636, 야.(현장대응단) 032-555-8119

상기사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



인천계양소방서